

## 제품 안전사고 예방, 소비자 '안전지킴이'가 나섰다

### 기표원, '소비자 제품안전모니터링 제도' 확대...65개 품목 집중 모니터링

불량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나섰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직접 시장감시에 참여하는 제품안전모니터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1차 자율시정을 조치하고, 미 이행시 정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 생활·어린이·전기제품 3개 분야에서 실시했으며, 올해 영유아·안전품질표시 제품을 추가, 5개 분야로 확대·세분화했다.

분야별 모니터링 활동은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소비자·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이 위탁·수행하게 된다. 각 단체는 모니터링 경험이 풍부한 소비자를 추천, 5개 분야별 소비자 제품안전감시단을 구성한다. 총 40명의 '제품안전감시단'은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대전·대구·부산·광주권)로 시판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월영 안전관리팀장은 “최근 수입제품 증가와 다양한 신제품 출시,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불량제품에 의한 소비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공산품분야 새로운 안전관리제도(KPS마크) 이행과 계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마크 개편내용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 KPS : Korea Products Safety

기술표준원은 금년 중점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안전위해성이 큰 전기온수기 등 21개 전기제품, 세정제 등 11개 생활용품, 비비탄총 등 11개 어린이용 제품, 유아용기저귀 등 8개 영·유아용품, 가정용 섬유제품 등 14개 안전품질표시제품 등 총 65개 품목을 선정했다.

제품안전감시단은 5월 어린이주간을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비비탄총, 인라인스케이트 등 어린이용

품을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24일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등 5개분야 제품안전감시단장 및 안전인증·검사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제품안전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최갑홍 기술표준원장은 "정부주도의 시판품조사 및 시·도 단속으로 제품안전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자율안전관리 확산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제품이 대우받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소비자 제품안전감시단 구성 〉

감시단	단장명
생활·화학제품 안전감시단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어린이용품 안전감시단	윤명오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
영·유아용품 안전감시단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안전·품질표시제품 안전감시단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전기제품 안전감시단장	박상규 한국기기유회사험연구원 이사장

### ◎ 제품안전모니터링 제도개요

\* 관련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0조(공산품 위해사고의 예방을위한 협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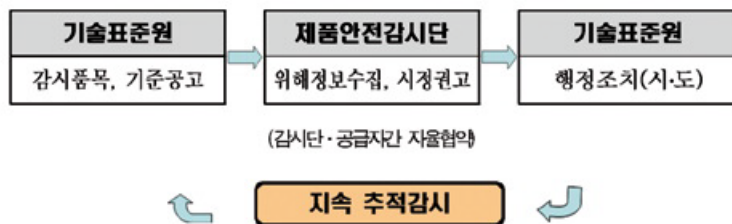
#### □ 추진목표

○ 기업과 소비자 및 정부가 함께하는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 □ 추진방안

- 정부는 중점 안전관리 대상품목과 안전기준을 사전에 제시
- 기업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제품안전감시단과「제품안전 자율이행협약」을 체결,
-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품안전감시단이 기업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시정권고 하는 한편 정부의 안전관리정책에 반영하거나 조치를 요청

### 〈 모니터링 흐름도 〉



## 수출 코리아, 글로벌 환경규제를 넘어라!!

### -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 - RoHS, REACH, EuP 등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제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21세기의 시대적 추세로 자리 잡은 RoHS, WEEE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와 수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07.4.16.~17. 양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전문가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제품의 제조·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따른 환경오염을 통제하려는 노력역시 강화됨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규제가 유럽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환경규제의 바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해외의 환경규제 파악과 대응은 수출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으나 전문 인력, 자금, 기술력 등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부족 등으로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중소기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으로 40%가 '정보부족'을 호소

- 규제의 개략적 내용 파악 및 대응의 필요성 공감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차원의 혼란 여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31개 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문('06.11)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RoHS, REACH, EuP, WEEE 등 업계의 관심이 큰 주요 환경규제에 대해 중국, 유럽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규제의 핵심과 해법을 설명하고 규제대응 전문기관들이 각종 관련정보를 전시하는 한편, 기업 실무자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참가자들이 규제대응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한 자리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

○ China RoHS 입안부서인 중국 정보산업부(MII)의 표준전문가 Vicky Lu 박사를 초빙하여 최근 제정된 China RoHS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 중인 구주 산업환경협의회 박대영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유럽 현지의 REACH 대응 동향을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 기업 실무자들이 규제대응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강의실 외부에 별도의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실무 상담도 병행할 예정임

□ 앞으로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미치는 무역저해 효과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임

## 주요 국제환경규제 현황

###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 근거법률 : Directive 2002/96/EC
- 시기/대상 : '03. 2. 13/전기·전자제품
- 규제개요
  - 규제목적
    -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 억제(사전예방)
    -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최종 처리량 저감
    -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
  - 주요내용
    - 분리회수 시스템 운영, 수거처리비용(개별 생산자 또는 공동으로 부담) 및 재활용마크 부착('05.8.13부터 적용)
    - 생산자의 의무재활용 비율 부과('07.1.1부터 적용)

구 분	대상품목	Recovery	Recycle/Reuse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냉장고, 세탁기, 자동판매기 등	평균 중량의 80%	평균 중량의 75%
IT·통신장비, 소비가전	컴퓨터, 프린터, TV, 라디오, 팩스 등	평균 중량의 75%	평균 중량의 65%
소형가전, 전동공구, 완구 및 스포츠 장비, 조명장비, 검사·통제기기 등	청소기, 드릴, 비디오게임, 재봉틀, 연기검출기 등	평균 중량의 70%	평균 중량의 50%
가스방전램프(네온사인 등)	-	-	평균 중량의 80%

○ 진행현황

- EU 회원국의 자국법 제정은 완료되었으며 각 국별 Recycling Scheme의 사업자가 선정 중에 있음
- 현재 국내 제조 기업은 3~5개국에 수거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향후전망

- '08. 12. 31까지 유럽의회와 의사회에서 강화된 생산자 의무재활용 비율을 마련할 예정

□ RoHS(Restric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 근거법률 : Directive 2002/95/EC

○ 시기/대상 : '06. 7. 1/전기전자제품

○ 규제개요

- 규제목적 :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 범위

· WEEE지침 대상에서 의료기기 및 통제장비(난방조절기, 조절실험장비 등)를 제외한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 대·소형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대형 고정산업장비 제외),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자동판매기

- 주요내용

· 전기·전자제품내의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등 6개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 전기전자제품의 균질재료내 유해물질 최대 허용농도

물질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	카드뮴
최대허용농도	각각0.1%	0.01%

○ 진행현황

- 현재 국가별 시행법령 채택과 유해물질 시험분석방법 및 기기의 표준화, 최대포함 허용농도의 산정방식, 사용을 허가하는 면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 중

○ 향후전망

- 개별 국가 또는 업체는 RoHS 규제물질 이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큼

- 선진 업체는 자사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기업홍보의 일환으로 대상유해물질을 확대하여 엄격하고 관리하고 있음

□ ELV(End of Life Vehicles, 폐차처리지침)

- 근거법률 : Directive 2000/53/EC
- 시기/대상 : '00. 10. 21/모든 차량, 폐차량과 그 부품
- 규제개요
  - 규제목적
    - 자동차 개발 시 폐자동차의 활용을 고려하여 폐기물 감소 및 억제
    - 자동차 재활용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 제한
  - 주요 내용
    - [폐차회수] 제조업체 및 판매업자는 '02년 7월부터 신규등록차량을, 07년 7월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수거의무 부담
    - [재활용/회수 목표]

구분	2006. 1부터	2015. 1부터
재활용(Recycling)	80% 이상	85% 이상
회수(Recovery)	85% 이상	95% 이상

- [관련정보제공] 신차종 부품의 재질표기 및 출시 6개월 내 해체 정보 제공
- [폐기물 및 유해물질]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의 법규 규정량 이상 함유 금지('03. 7. 1이후 모든 판매 차량)
- 진행현황
  - 생산자는 특정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생산자의「자기 선언」을 인정함
  - EU 회원국은 시장에서의 준법상황점검을 테스트 구매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부과

○ 향후전망

- 재활용/회수 의무율이 향후 강화될 예정이지만 자동차 생산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으로 규제대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대기업은 자체 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환경규제 수준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관리를 시행 중

□ REACH(Regu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관리법)

○ 근거법률 : '07년 이후 공식채택 예정이나 규칙(Regulation)형태로 제정할 계획

※규칙(Regulation)은 각 회원국이 자국법 정비를 통해 시행되는 지침(Directive)와 달리 회원국의 법령정비 없이 자동 시행되는 EU의 법령임

○ 시기/대상 : '07. 6./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

○ 규제개요

- 규제목적

· 화학제품에 대한 시험 및 위험성평가의 책임소재를 EU 각 정부에서 제품 생산자로 변경하여 화학 제품의 체계적인 책임관리

- 주요 내용

· [신물질 및 기존물질의 통합관리] 1톤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시험 및 등록의무와 위험물질 및 100톤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관리

· [업체관리의무강화] 제조/수입업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과 함께 시험방법 제공, 위험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화학물질 등록시기

구분	법률시행후 등록시기
1,000톤/년	3년 이내
100~1,000톤/년	6년 이내
1~100톤/년	11년 이내

## ○ 진행현황

- 현재 EU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동결정 절차에 의해 입법절차가 진행 중
- 향후전망
- 제도 시행 시 법률 준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국내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 EuP(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s,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

## ○ 근거법률 : Directive 2005/32/EC

## ○ 시기/대상 : '05. 8. 11/에너지사용제품(단, 자동차 등 운송수단 제외)

## ○ 규제개요

## - 규제목적

-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및 비용감축으로 지속가능성 향상
- 에너지효율을 높여 국가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 - 주요 내용

- [원칙]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의 기능성이나 경제성 뿐 만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
- [에코디자인 수행 의무화] 에코디자인 되지 않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EU 시장진입 금지 및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정보 공개요구 : 자원채취, 생산, 포장/운송,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고려
  - ※ 회원국은 시장 감독 조치 기관을 설립하여 제품의 적합성 검증
- [적합성 검증] EU내 생산자 및 수입자는 에코디자인 이행수단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CE마킹을 부착해야 함
  - ※ 이외에도 EU 에코라벨을 획득한 제품 및 EU 표준을 준수한 제품도 이행수단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 진행현황

- EU 집행위원회에서 에코디자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EuP 이행방안을 개발 중
  - ※ IEC/TC111/WG2에서 전기전자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에 관한 규격 작업 중

## ○ 향후전망

- EU 집행위원회에서 '07. 7. 6까지 에코디자인 요건설정 우선대상품목을 포함한 작업 계획을 발표 예정
- EU 각 회원국은 '07. 8. 11까지 동 지침에 따라 에코디자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완비할 예정



□ J-Moss(The Marking of Presence of the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근거법률 : 자원유효이용촉진법(1991, 법률 제48호) 및 관련 표준규격 JIS C 0950('05. 12. 20)
- 시기/대상 : '06. 7. 1/전기·전자제품
- 규제개요
  - 규제 목적
    - 유해화학물질을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사업자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개선을 촉진하고 일반소비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함
    -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부하를 줄임
  - 주요 내용
    - RoHS에서 규정하는 특정화학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이 허용농도를 넘을 경우 함유마크(R마크) 표시 의무
      - ※ 함유마크를 기기 본체, 포장상자 및 카탈로그 등에 표시하고 관련 정보를 Web에 공개
      - ※ 허용농도 : 카드뮴(100 ppm), 나머지(1,000 ppm)
    - 특정화학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비함유마크(G마크) 표시여부를 생산자가 임의로 선택 가능
- 진행현황
  - 관련 규격인 JIS C 0950에 특정화학물질 함유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06. 7. 1시행)
  - 특정화학물질의 구체적인 농도측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향후전망
  - 현재 RoHS의 6대 특정화학물 외에 다른 화합물 함유표시에 대해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의무 규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큼
  - IEC/TC111에서 작업중인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이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JIS C 0950이 개정 예정

□ 중국 RoHS(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 근거법률 :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06. 2. 28 제정)
- 시기/대상 : '07. 3. 1/전기·전자제품

## ○ 규제개요

## - 규제 목적

-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 - 주요내용(EU RoHS와의 차이점)

- [적용대상품목] 전자정보제품 우선관리 목록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현재, 미정)
- [제한 유해물질] RoHS의 6대 유해물질 +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향후 제한할 유해물질 세부 목록 공표 예정)
- [유해물질 허용농도 및 예외규정]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기준 및 적용예외 규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정보공개 및 라벨링 의무] EU RoHS에 없는 규정으로 유해물질의 함량 및 제조원산지, 제품 안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의무
- [적합성 증명절차] EU RoHS는 자기적합성 선언 방식인데 반해 중국 당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강제 인증을 받아야 함

## ○ 진행현황

- 별도 목록을 통해 규정된 유해물질 제한 관련 규정과 사전인증 의무화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유해물질 함유정보 등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

## ○ 향후전망

- 중국 RoHS 법안이 공표되기는 했으나 아직 법 집행을 위한 세부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을 확정해 공표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중국 RoHS는 EU RoHS에 비해 그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모든 조항이 강제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계량기 품질이 좋아진다”

### 수도미터 · 주유기 · 전력량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계량기 KS마크 인증 추진

앞으로 수도미터, 저울, 전력량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KS표시(㉿)인증이 추진된다.

지금까지「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18개 품목에 대하여 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제작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자 포함) 또는 수입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판매하고 있으나, 형식승인은 단순히 제품만 시험하여 승인하므로 계량기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 〈참고〉

- 법정계량기 :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 형식승인 : 법적으로 정한 계량기 형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측결과로서 사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법적 연관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국내 370개 법정계량기 제작업체 중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업체로 계량기의 품질저하와 업체 난립이 우려되며, 수요자는 품질이 좋은 계량기를 구매하기 위해 인력, 품질관리시스템, 제조 및 검사 설비를 갖추고 품질관리를 하는 KS표시 인증 제품을 선호함에 따라 KS표시 인증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계량기 KS표시 인증업체는 전체 계량기 생산업체 중 21개 업체(6%)만 인증을 득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에서는 KS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KS표시 인증을 받을 경우 형식승인 면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있음을 홍보하여 업체로 하여금 KS표시 인증을 받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계량기 생산 업체가 형식승인 위주에서 KS표시 인증으로 전환 시 영세한 계량기 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품질향상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량기 수요자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자료

 법정계량기의 종류 : 18품목

1. 판수동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4. 분동 5. 이동식 측정기, 6. 가스미터, 7. 수도미터, 8. 오일미터, 9. 주유기, 10. LPG 미터 11. 눈새김 탱크, 12. 눈새김 탱크로리, 13. 적산열량계, 14. 전력량계, 15. 곡물수분측정기, 16. 속도측정기, 17. 체온계, 18. 혈압계

 법정계량기의 생산업체 : 총 370업체

· 질량계 및 부피계 생산업체가 277업체(76%)를 차지하며, 종업원은 20명 미만이 220업체(60%)임

〈 법정계량기 제작업체수 〉 ( '06.12 기준 )

구분	계	질량계	부피계	전력계	열량계	기타
업체수	370	153	124	39	13	35

 수급 현황

· '06년 법정계량기 생산은 7,800억원, 수출은 62백만\$, 수입은 43백만\$ 규모임  
- 내수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적으며, 수출은 생산액의 8.3% 정도임

 형식승인 현황

· 계량기 생산업체 370업체 중 152업체(42%)가 형식승인 획득  
- '07. 9. 4.부터는 형식승인이 의무화됨

〈 품목별 형식승인 건수 〉 (단위 : 형식승인수/업체수, '06.12말 기준)

지시저울	전기저울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주유기	오일미터	혈압계	열량계	계
23/7	66/15	269/32	31/8	240/54	54/19	9/2	2/1	13/2	46/12	753/152

 KS인증 현황

· 370개 업체 중 19개 업체(5%)만 KS표시 인증을 받음

〈 품목별 KS인증현황 건수 〉 (KS인증업체/생산업체, '06.12말 기준)

저울	오일미터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열량계	LPG미터 등 기타	계
3/137	3/40	7/21	4/14	1/40	1/8	- /110	19/370

## 미국 특허소송 판례, 이제 한글로 본다 !!

### - 올해 9월 미국 연방항소법원 특허소송 판례, 온라인 무료 서비스 개시 -

이제 누구나 미국 특허소송 판례를 손쉽게 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진상우)은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특허소송 판례에 대한 분석자료를 판례 원문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CAFC 특허소송 판례에 대한 사건개요, 주요 쟁점, 승·패소 요인, 판례 경향변화, 관련 특허 등 상세한 분석 내용과 판례 원문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모든 판례는 법률 쟁점별, 산업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관심 있는 판례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1982년 설립된 특허전담 항소법원으로서, CAFC에서의 판결이 사실상 특허소송의 최종심이기에 때문에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발생할 경우 CAFC 판례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특허소송 판례는 Westlaw나 Lexis-Nexis와 같은 해외 법률DB 사이트에서 유료로, 그리고,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CAFC 판례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 특허소송 판례 분석에 대한 온라인 무료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린 우리 기업이 특허소송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허청은 미국 특허분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특허소송 판례를 분석한 “미국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해 왔다.

2005년에는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소송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미국특허분쟁지도 1편’을 작성했으며, 지난해에는 2004년 이후의 모든 CAFC 판례 400여건을 심층 분석한 ‘미국 특허분쟁지도 2편’을 발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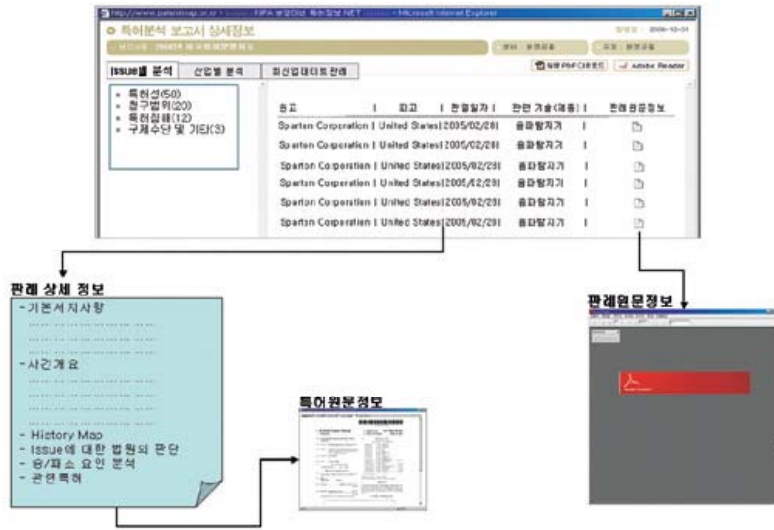
이번 미국 특허소송 판례 온라인 서비스는 지난해 분석한 2004년 이후의 CAFC 판례를 DB화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 이후의 최근 판례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향후 CAFC 판례뿐만 아니라, 연방지방법원의 주요 특허소송 판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서비스는 올 9월부터 특허맵 홈페이지(www.patentmap.or.kr)를 통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 - 미국 특허소송 판례 온라인 서비스 예시 -

〈 법률 쟁점별 특허소송 판례 서비스 예시 〉



〈 산업분야별 특허소송 판례 서비스 예시 〉

